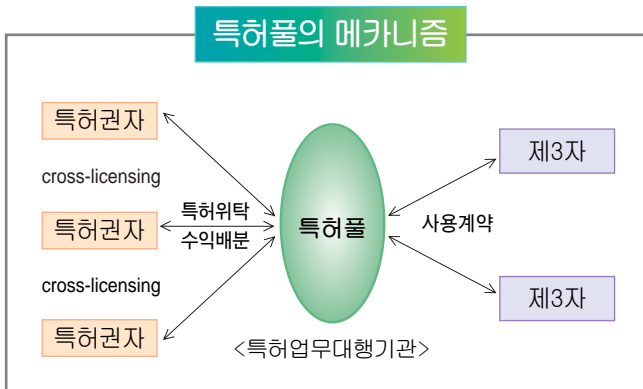


특허풀(Patent Pool)제도

전자심사담당관실

I. 특허풀의 개념

-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(pool)로서, 특허업무대행기관이 특허권자들을 대신하여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(cross-licensing),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,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함



-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드는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며, 자신이 필요로 하는 타인의 특허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, 제3자는 필요한 핵심특허들을 One-Stop 계약에 의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특허풀은 기술거래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, 향후 더욱 확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

II. 특허풀의 역사

● 태동배경

- 19C 중반부터 미국내의 일부 상공인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Trust를 결성한 것에서 유래하며, 초기의 특허풀은 다소 악의적인 측면이 강하였음

● 연혁

- 1856년 : 재봉틀(sewing machine) 특허풀
 - 역사상 최초의 특허풀
- 1908년 : 영사기(movie projector) 특허풀
 - Amat, Biograph, Edison, Vitagraph 등 4개의 회사가 결성

- 영화관업자 등 제3자에 대한 로열티 징수
- 1916년 : 침대.bed) 특허풀
 - 접는 침대에 관련된 특허권자들이 결성
 - Seng社가 독점사용권을 부여받고 특허풀에 고정사용료 지불
 - 사용료 수입은 특허풀의 특허권자들에게 분배
- 1917년 : 항공기(air craft) 특허풀
 - 제1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던 미국정부는 당시 Wright사와 Curtiss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항공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다른 회사들로 하여금 특허풀을 결성토록 우회 지원
- 최근의 특허풀
 - MPEG LA(1997), DVD 관련 특허풀(1998, 1999) 등 전자통신분야에서 다수의 특허풀 출현
 -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풀의 결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

III. 특허풀의 기능

● 순기능

- 특허권의 사용허락을 득하기 위한 제반 비용의 절감
 - 특정기술에 필요한 모든 특허권을 한번의 계약으로 사용가능
 - 특허권의 무단사용에 따른 특허분쟁의 여지제거, 소송비용 절감
- 기술의 표준화 및 확산에 기여
 - 특정기술의 필수특허만으로 구성되므로 기술 표준화 및 확산이 용이
- 기술정보의 체계적 교류
 - 특허풀 구성원은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중복연구 방지가능

● 역기능

- 상호 代替財의 관계에 있는 특허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경우,
 -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
- 共謀 또는 가격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경쟁 저해
 - 제3자의 특허권의 실시거부, 구성원간의 가격·생산량 담합 가능성
- 신기술에 대한 R&D 투자의 의욕 저해
 - 신기술의 개발노력보다는 다른 구성원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의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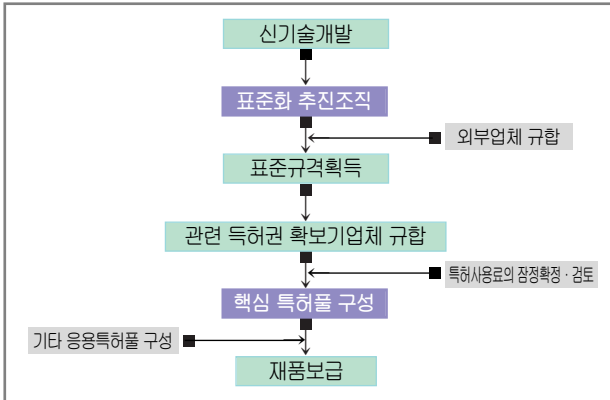
특허풀의 사회·경제적 이익이 역기능적 비용을 능가한다는 점 때문에 반경쟁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음

IV. 최근 특허풀의 결성 과정상 특징

● 국제기술표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허풀

- 특허풀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관련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, 특허풀 외부에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특허가 없거나, 특허풀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함
- 특정기술이 국제기술표준으로 완성되면 제품제조자들은 호환성 때문에 국제기술표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국제기술표준의 규격을 획득한 특허권자들로 하여금 특허풀을 결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
- 따라서, 최근 특허풀은 기술표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각국의 기업들은 특허풀 가입의 전제가 되는 국제기술표준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게 됨

● 특허풀과 국제기술표준화간의 상호 연관도



V. 주요 특허풀의 동향

● 완성단계의 특허풀

- MPEG LA : 동영상 압축기술 관련 특허풀
 - 1997년 출범, 미국 덴버 소재
 - MPEG-2 : 22개 기업가입, 총 575건의 특허보유
 - MPEG-4 영 상 : 20개 기업가입, 총 98건의 특허보유
 - MPEG-4 시스템 : 7개 기업가입, 총 20건의 특허보유
 - ※ MPEG LA :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Licensing Agency
- VIA Licensing Corporation : 음성압축기술 관련 특허풀
 - 1998년 출범,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
 - 13개 기업(AT&T, 돌비, 소니 등)이 특허권자로 가입
 - ※ VIA Licensing Corporation 은 미국 돌비(Dolby)사의 독립 자회사임

- 1394 LA : 대용량 고속 전송기술 관련 특허풀
 - 1999년 출범, 미국 덴버 소재
 - 소니 등 8개 기업 가입, 총 93건의 특허보유
 - ※ 1394 LA의 특허업무대행업체는 상기 MPEG LA와 동일함
 - 1394는 IEEE(전기전자기술자협회)에서 확정된 기술표준의 일련번호임
- DVD3C Licensing Agency : DVD 기술에 대한 특허풀
 - 1998년 3개회사(필립스, 소니, 파이어니어)가 결성
 - 2003년 LG전자가 추가로 가입됨으로써 명칭이 DVD4C로 바뀔 예정임
- DVD6C Licensing Agency : DVD 기술에 대한 특허풀
 - 1999년 6개사(미쯔비시, 도시바, 히다치, 파나소닉, 타이워너, JVC)가 결성
 - 총 239개의 특허보유
 - 결성중인 특허풀
- DVB-T LA : 유럽식 디지털 지상방송 규격인 DVB-T의 특허풀
 - 1998년 DVB-T 특허권을 가진 4개 회사가 특허풀 결성추진
 - 특허권 미보유회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자체 결성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특허권을 MPEG LA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 중
 - ※ DVB-T : Digital Video Broadcasting-Terrestrial, 유럽방식의 디지털 지상방송 규격
 - 매체에 따라 DVB-C(케이블 TV), DVB-S(위성)으로 구분
- 3G Patents : 3세대 통신기술 관련 특허풀
 - 1999년 결성, 프랑스 Chavenay 소재
 - 26개 기업·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나, 핵심특허의 최대 보유사인 미국의 퀄컴(Qualcomm)의 가입거부로 인하여 특허풀의 성공이 회의적임
 - ※ 퀄컴의 특허보유 현황
 - CDMA2000 관련 특허의 80%, W-CDMA 관련 특허의 20% 보유
 - 2002. 10 : 독자적으로 3G 특허풀을 추진중임

VI. 국내기업의 특허풀 가입현황

특허풀	가입기업 및 등록 특허건수
MPLG LA	
MPEG-2	삼성전자(4건)
MPEG-4 영 상	삼성전자(4건), 팬택&큐리텔(2건)
MPEG-4 시스템	삼성전자(1건), ETRI(1건)
VIA	삼성전자, ETRI
3G Patents	삼성전자, LG전자, ETRI, 한국통신, SKT
DVD3C	LG전자